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267
----------	------

제출연월일: 2018. 9.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 증진,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기능 (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안 제3조)

다. 협의회 임원 (안 제4조)

- 협의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

라. 총회 및 의결(안 제6조)

마. 실무협의회(안 제11조)

바. 경비부담(안 제12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나. 예산조치: 매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만원 반영

다. 규약전문: 별첨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 부 칙

- ① (효력발생) 협의회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임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 울	<u>성동구</u> ,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16
인 천	남구	1
광 주	서구	1
경 기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6
충 북	제천시, 보은군	2
충 남	논산시, 당진시	2
전 북	익산시	1
전 남	여수시, 곡성군	2

(지방자치단체 건제순)

##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

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10. 25.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9. 21.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8. 9. 27.

다. 상정일자: 2018. 10. 23.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 증진,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기능 (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안 제3조)

다. 협의회 임원 (안 제4조)

- 협의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

라. 총회 및 의결(안 제6조)

마. 실무협의회(안 제11조)

바. 경비부담(안 제12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 나. 예산조치: 매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만원 반영
- 다. 규약전문: 별첨

####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안건은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회에 따라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협의회는 주민자치를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만들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교육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지방교육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방교육 발전 도모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사무 처리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만큼, 협의회가 기능이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